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4380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피 고	대전광역시장
변 론 종 결	2017. 1. 18.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15. 한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005,239,96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1. 한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2,656,793,6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아이디에프, 주식회사 유마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연상사, 주식회사 제이에이와이 등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판매업자'라 하고, 각 업체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외항선 선원 또는 여객선의 승객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용담배(이하 '이 사건 특수용담배'라 한다)를 수출 용도로 공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공급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특수용담배 공급거래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3. 6.부터 2013. 7.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판매업자들이 원고로부터 2009. 1.부터 2013. 12.까지 공급받은 특수용담배를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중국 등지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 2. 피고에게 관련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4. 15.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005,239,960원을 부과하였고, 2014. 7. 11.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1.부터 2013. 6.까지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12,656,793,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5. 6. 26.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5.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제4호),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제5호)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가 판매업자에게 담배를 국제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용도 등으로 공급한 경우, 그 담배가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판매되었더라도 이 역시 면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위 거래에 대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까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제5항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제232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수출', 제4호로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제5호로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를 들고 있어,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2011. 1. 1.부터 적용되는 법률만을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목적으로 제작된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수출 용도로 제공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은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반출하여 수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유통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판매업자이므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판매업자는 원고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에세라이트(국, 여객선용)'이라고 기재한 '특수용(국제여객선) 제조담배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국제선 여객이나 외항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특수용담배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였다.

2) 이 사건 특수용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는 "면세용, Duty Free"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거래의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의 용도가 '여객선용', '국제여객' 등으로 표시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판매업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판매업자가 수출용 컨테이너에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적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판매업자가 이 사건 특수용담배에 대한 수출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이 사건 판매업자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하였다.

5) 2010. 3.부터 2011. 1.경까지 원고의 B팀장으로,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C지점장으로,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의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E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 이 사건 판매업자 중 A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특수용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담배를 계속하여 잘 공급해주고, 원고의 직원들이 특수용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위와 같이 A에 담배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2,428,140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07, 617(병합), 이하 '형사 1심판결'이라 한다]. E과 검사가 형사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7. E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1심판결을 파기하고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2,428,14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3878, 이하 '형사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6) E은 위 배임수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F에게 공급한 특수용담배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7) 형사 1심판결과 형사 항소심판결에서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특수용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즉 특수용담배가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형사 1심판결과 형사 항소심판결은 '원고가 F에게 특수용담배를 공급한 거래가 수출의 실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고, E이 F과 특수용담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E이나 원고가 위 특수용담배가 수출에 사용되지 않고 국내시장에 반입되는 것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어,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부분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4, 을 제7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5항은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외항선 선원이나 국제선 승객에 대한 판매용' 등으로 반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제조자가 담배를 수출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외항선 선원이나 국제선 승객에 대한 판매용' 등으로 반출신고하고도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그 용도와는 다른 '수출용'으로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용도 외 처분으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용 등으로 반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수출용으로 인도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54조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은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행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반출신고된 면세용도와 다른 면세용도로 반출한 경우'('반출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적어도 '반출한 후의 단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수용담배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수출용'이든 그 형식이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용'이든 관계없이 구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에 해당하고, 제조자인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그와 같은 면세담배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반출 이후 이 사건 특수용담배의 국내유통에 제조자인 원고가 관여하여 이 사건 특수용담배의 처분주체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까지만 한 원고에게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도 외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의 문언에 반한다(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은 면세담배 반출 이후 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비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직원인 E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형사 1심판결 및 형사 항소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특수용담배의 국내유통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반출 이후의 면세용도 외 처분에 관한 처분 주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150조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단위: 원)

연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계
	본세	벌칙 가산세 (30%)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3%)	소계	본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3%)	소계	
2009	1,729,418,000	518,825,400	889,663,800	**3,137,907,200**	864,709,000	86,470,890	444,831,880	**1,396,011,770**	4,533,918,970
2010	543,247,500	162,974,250	193,263,890	**899,485,640**	271,623,750	27,162,370	96,631,940	**395,418,060**	1,294,903,700
2011	3,452,105,500	1,035,631,650	987,292,880	**5,475,030,030**	1,726,052,750	172,605,270	493,646,400	**2,392,304,420**	7,867,334,450
2012	11,505,437,200	3,451,631,160	2,016,016,050	**16,973,084,410**	5,752,718,600	575,271,830	1,008,008,000	**7,335,998,430**	24,309,082,840
합계	17,230,208,200	5,169,062,460	4,086,236,620	**26,485,507,280**	8,615,104,100	861,510,360	2,043,118,220	**11,519,732,680**	**38,005,239,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 계
	본 세	용도변경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 계(A)	본 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 계(B)	
2013년 1월	1,041,625,000	312,487,500	155,306,280	1,509,418,780	520,812,500	77,653,140	598,465,640	2,107,884,420
2013년 2월	993,550,000	298,065,000	138,600,220	1,430,215,220	496,775,000	69,300,110	566,075,110	1,996,290,330
2013년 3월	1,025,600,000	307,680,000	134,148,480	1,467,428,480	512,800,000	67,074,240	579,874,240	2,047,302,720
2013년 4월	259,605,000	77,881,500	31,542,000	369,028,500	129,802,500	15,771,000	145,573,500	514,602,000
2013년 5월	1,368,535,000	410,560,500	153,549,620	1,932,645,120	684,267,500	76,774,810	761,042,310	2,693,687,430
2013년 6월	1,686,631,250	505,989,370	174,060,340	2,366,680,960	843,315,620	87,030,170	930,345,790	3,297,026,750
합계	**6,375,546,250**	**1,912,663,870**	**787,206,940**	**9,075,417,060**	**3,187,773,120**	**393,603,470**	**3,581,376,590**	**12,656,793,650**

(단위: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3)

관계 법령

■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특수용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담배사업법 시행령(2015. 11. 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5. 영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